

DDA/FTA 농수산물분야
협상동향 설명회 자료

한·미 FTA 관련 협의 농업분야 추가협상 결과 및 보완대책

2010. 12.



농림수산식품부

Ministry for Food, Agriculture, Forestry and Fisheries

목 차

I . 협의 경과	1
II . 전체 협의결과	2
III . 농업분야 협의결과	3
1. 쇠고기 문제	3
2. 돼지고기 양허개선	3
IV . 국내 보완대책	4
1. 추진 현황	4
2.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	5
가. 품목별 경쟁력 강화	
나. 한국농어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	
다. 농어촌활성화 지원	
라.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	
참고1. 한미 FTA 우리측 농산물 주요 양허결과(07.4)	8
참고2. 한미 FTA 보완대책 재정지원 계획	9

- '06.2월 출범 선언 후 8차례 공식 협상과 두 차례 고위급 협의를 거쳐 최종 타결('07.4.2일)되었으며, '07.6.30일 공식 서명
 - 한·미 FTA 비준 동의안은 '09.4.22 외통위 통과 후 계류 중
- 양국은 한미 FTA 진전을 위해 G-20 정상회의 계기, '10.11.8~10일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나,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
 - 양측은 자동차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였으나, 미측은 쇠고기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
 - 우리측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한·미 FTA와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,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음
 - ※ 양국 정상은 합의안 마련 불발에도 불구하고, 추가 쟁점에 대해 조속히 협의를 추진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
- 11.30~12.3일 한미 통상장관협의 개최(메릴랜드주 콜롬비아시)
 - 우리 대표단은 미측의 자동차분야 개선 요구에 대응하면서 전체협상 이익균형 확보를 위해 돼지고기 양허기간 연장 개선을 포함한 관심사항 제기
 - 미측은 자동차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관세폐지 일정 조정, 한미간 안전기준 동등성 확대, 국내 관련규정의 투명성 제고, 자동차 세이프가드 도입 등을 중점 제기

1. 자동차 분야

- (관세)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 상호 4년후 관세 폐지
* 한국은 (8%) → 4('15년까지) → 0, 미국은 (2.5%) → 2.5('15년까지) → 0
- (세이프가드) 자동차 대상으로 상호 적용 가능한 세이프가드 도입
- (안전기준) 제작사별 25,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
- (CO₂/연비기준) 4,500대 이하('09년 판매기준) 제작사에 대해 19% 완화된 기준 적용
- (투명성) 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해 공포후 시행일까지 도입기간 12개월 부여, 향후 CO₂/연비에 기반한 세계 도입시 절차적 투명성 규정

2. 농업, 의약품 등

- (돼지고기) 냉동목살의 관세폐지 기간 2년 연장
- (의약품) 허가·특허 연계 의무를 발효후 3년 유예
* 당초 한·미 FTA 협정상 시판방지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으나, 연계 이행 자체를 3년 유예로 변경
- 대미 현지 투자기업 파견 근로자의 비자(L-1) 유효기간 연장
: (기존 사업체) 3 → 5년, (신설 사업체) 1 → 5년

III 농업분야 협의결과

1. 쇠고기 문제

□ 쇠고기 문제는 공식 거론되지 않고, 협의 없었음

2. 돼지고기 양허개선

□ 돼지고기(냉동목살)에 대한 관세폐지 개선을 요구

○ (현행) '14.1.1일까지 폐지 → (변경) 2016년까지 5단계로 폐지

- 대미 돼지고기 수입의 약 80%를 점유하는 냉동목살에 대해 "2016.1.1일 관세 폐지"

	현행 관세	2012년	2013.1.1일	2014.1.1일	2015.1.1일	2016.1.1일
· 당초	25% →	16.7 →	8.4 →	0	-	-
· 개선	25% →	16 →	12 →	8 →	4 →	0

○ (기대효과) 냉동목살에 대해 2년 정도 관세 존속기간 연장

- 냉동목살 수입액('09) : 미국 160백만불(미국산 전체 돼지고기 수입 대비 79%)

(단위 : 천톤, %)

	전체	미국	EU
· 돼지고기 전체 수입량('09)	308천톤	96천톤(31%)	103(33)
· 냉동삼겹살 수입량('09)	85	1(1)	59(69)
· 냉동목살 수입량('09)	197	83(42)	40(20)

*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부과액 당초 40백만불에서 64백만불로 증대 추정

IV | 국내 보완대책

1. 추진 현황

□ '07.4월 한·미 FTA 협상타결 후 품목별 영향분석 등 범정부적 논의를 통해 보완대책 수립('07.11)

○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기반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종합적인 보완대책 수립

- 중점추진 82개 사업(농업 61, 수산 21)을 선정, 투융자 지원
- 10년간('08~'17) 21.1조원 재정지원(농업 20.4조원, 수산 0.7)

구 분		농 업	수산업	계
지원 분야별	직접피해보전	1.2	0.07	1.3
	품목별 경쟁력 강화	7.0	0.05	7.1
	농수산업 체질개선	12.1	0.6	12.7
합 계		20.4	0.7	21.1

□ 한·미 FTA 비준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사전 대비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대책 추진

○ 소득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등 FTA 비준과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집행 유보

* '10년 집행유보사업(9개) : 소득보전직불(농업, 수산업), 폐업지원(농업, 수산업),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, 생축수송특장차량지원, 친환경농산물소비지유통활성화, 신선편이 가공시설현대화, 관리회사제

* 한미 FTA '11년 예산 : 1조 6,116억원 반영

□ '10.11.30~12.3일 한미 통상장관협의결과와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·미 FTA 보완대책을 점검 예정

2.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

가 품목별 경쟁력 강화

축산분야 | 수입산과 차별화, 품질 고급화

- 둔갑판매 방지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국내산 수요 확충
 - 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시행
 - 쇠고기('08.6), 돼지·닭고기('08.12), 오리고기·배달용 치킨('10.8)
 - '08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
- 축사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
 - 노후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(보조 30%, 융자 50%)
 - 우수 브랜드 육성, 개량·사육기술 개선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
 - 브랜드육타운을 조성(4개소)하고 조사료 재배를 37만ha로 확대
 - 축산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도축세 폐지('11.1 시행)

원예분야 | 고품질, 저온유통체계 구축

- 거점 산지유통센터(APC) 지원 및 채소류 저온유통체계 구축
 -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거점APC 국고보조비율 상향('11년 신규: 30% → 40%)
 - 산지 생산자 조직에 예냉설비, 냉장차량 등 지원

수산분야 | 원양·연근해·양식어업 경쟁력 제고

- 어선 설비 노후설비 교체 및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화
 - 원양어선 급냉시설, 활어운반선 건조, 특수수조 컨테이너 제작 등

나 한국농어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

□ 경영체 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농어업정책 추진

- 주업농의 소득·경영안정 장치를 확충하고 경영규모 확대 지원
 -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('10년부터 도상연습, '13년 이후 본사업)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및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도입
- 이를 위해 농가등록제 등 제도적 기반 구축
 - ※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'09.4.1)
-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등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지원 강화
 -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지역을 진흥지역 밖으로 확대하고, 매도·임대를 동일단가(월 25만원/ha)로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편

□ 광역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식품산업 육성지원 강화

- 연구기관, 대학, 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첨단 식품클러스터(광역 식품 클러스터) 조성 추진
- 수산 가공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지원
 - 수산물 가공 물류센터 건립으로 고품질 수산물 생산 기지화
- ※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정('07.12.21)

□ 종자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지식·기술산업 육성

- 신품종 육종,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투자 대폭 확대
 - * 우수종자 보급 : 식량, 과수 중심 → 채소, 화훼, 약용작물 등으로 확대
- 고부가가치 내수면 양식품종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

다 농어촌활성화 지원

- 향토자원을 발굴·육성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어촌산업 진흥
 - 낙후 시군당 19~29억원을 지원하는 **2단계 신활력 사업**(‘08~‘10) 추진
 - * 2단계 신활력사업 투융자 5,682억원, 낙후지역 70개 시·군 선정 지원
-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**농지제도 개편** 추진
 - 진흥지역 내 **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제한 완화**(3천→1만㎡)
 - *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규모제한 완화(바닥면적 660→1,000㎡)
 - 「계획관리지역」의 시·도지사 농지전용허가 권한 **확대**(20→50ha)
 - ※ 「도시와 농산어촌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정(‘07.12.21)

라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

- 피해보전직불제는 **피해보전비율을 상향조정**(80%→85)하고 직불금 산정기준을 가격에서 **단위면적당 조수입(생산액)**으로 변경
 - ◆ 품목별 직불금 : 생산면적(마리) × (기준조수입* - 당년조수입) × 85%
 - * 기준조수입 : (품목별 직전 5개년 조수입 중 최고·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조수입) × 80%
 - 대상품목 : 사전지정(시설포도·키위) → **사후지정**
 - 수입농산물과 직접적 대체성이 있는 품목(감귤과 오렌지) 포함
- 폐업지원제도는 **순수익방식으로 개편**, 과도한 신청수요를 억제
 - ◆ 농가당 폐업자금 : 폐업면적(마리) × 순수익(조수입 - 생산비) × 3년
 - 대상품목 : 사전지정(시설포도·키위·복숭아) → **사후지정**

참고1**한·미 FTA 우리측 농산물 주요 양허결과[07.4]**

□ (축산물) 가장 민감한 쇠고기 양허기간 장기화에 노력

- 쇠고기(관세율 40%) : 15년간 관세폐지, 농산물 세이프가드(ASG) 설정
- 냉장삼겹살 및 목살(22.5%) : 10년간 관세폐지+ASG
 - 냉장육(도체와 이분도체, 전·후지; 22.5%), 가공돈육(27~30%) 등은 2014. 1. 1 관세 폐지
- ※ 대미 수입이 가장 많은 냉동목살은 이번 한미 통상장관협의('10.11.30~12.3)에서 **2016.1.1일 관세 폐지**키로 조정
 - * 냉동목살 수입액('09) : 미국 160백만불(미국산 전체 돼지고기 수입 대비 79%)

□ (낙농품) 양허기간을 장기화하는 조건으로 TRQ 물량 제공

세부 품목(관세율)	한·미 FTA 결과
혼합분유(36%)	10년
탈·전지(176), 연유(89)	현행유지 + TRQ(통합5,000톤)
치즈(36)	15년(체다치즈 10) + TRQ(7,000톤)
버터(89)	10년 + TRQ(200톤)
유장(49.5)	10년 + TRQ(3,000톤)

* TRQ : 발효년도부터 부여하는 무관세 물량(매년 3% 증량)

□ (과수) 사과, 배, 오렌지에 대하여는 장기 양허 또는 계절관세 적용

- 사과(45%) : 후지 20년간 폐지+ASG, 기타 품종 10년간 폐지+ASG
- 배(45%) : 동양배 품종 20년간, 기타 품종 10년간 관세폐지
- 오렌지(50%) : 계절관세 기간(9~2월) 중 현행관세 유지 및 TRQ(2,500톤) 제공, 비성수기(3~8월)는 7년간 관세폐지
- 감귤(온주밀감 ; 144%) : 15년간 관세폐지

□ (기타) 쌀은 양허제외, 고추·마늘·양파 : 15년간 관세폐지+ASG

참고2

한미 FTA 보완대책 재정지원 계획

□ 한미FTA 대비 중점추진 82개(농업 61+수산21) 사업을 선정하고 10년간('08~'17) 총 21.1조원 투융자 지원

구 분		농업	수산업	계
지원 분야별	직접피해보전	1.2	0.07	1.3
	품목별 경쟁력 강화	7.0	0.05	7.1
	농수산업 체질개선	12.1	0.6	12.7
	합 계	20.4	0.7	21.1

□ 기존 농업농촌종합대책('04~'13년 119조 투융자계획)과 한·미 FTA 투융자 계획('08~'17)이 겹치는 기간은 당초 119조 투융자 계획(A : 7조원) 대비 5.1조원 증액(B+C)

○ 증액분 5.1조원은 다른 농림사업의 축소 조정을 통해 3.1조원(B)을 조달하고, 나머지 2조원(C)은 119조원 외로 추가 확보

